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inform.pwc.com

pwc

SAMIL | 삼일회계법인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 최종기준서 확정 - 새로운 수익인식 모형의 이해

발전 및 공익사업

No. 2014-02 (부록)
2015 년 5 월 8 일

목차:

개요.....	1
적용범위.....	2
고객과의 계약의 식별.....	5
이행의무의 식별.....	8
거래가격의 결정.....	11
거래가격을	
이행의무에 배분.....	14
이행의무가 충족될 때	
(또는 충족됨에 따라)	
수익인식.....	16
종합 사례 -	
5 단계 모형의 적용.....	19
표시와 공시, 경과규정 ..	22

요약

2014 년 5 월 28 일, IASB 와 FASB 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수익인식에 대한 합치된 기준을 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전보다 상당히 많은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어 거의 모든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사항의 증가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따르고 있는 회계 관행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 depth 2014-02 은 새로운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본 부록에서는 발전 및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의 도입을 준비하며 특히 유의할 만한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요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서 (새로운 기준)는 현재 시행 중인 IFRS 및 US-GAAP 의 수익인식에 관한 모든 지침을 대체하게 됩니다. 발전 및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당국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기준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 부록은 발전 및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한 사항들로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요율규제거래 (tariff-based sales)가 새로운 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계약의 변경 (contract modifications)을 회계처리 하는 방법 (3) 거래가격을 계약 내의 이행의무들에 배분하는 방법, (4)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2015 년 4 월 28 일, IASB 는 새로운 기준의 시행일을 2018 년 1 월 1 일까지 1 년 간 연기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가결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여전히 새로운 기준을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5 년 4 월 29 일, FASB 는 Accounting Standards Update 에 대한 제안서 (FASB 의 제안서)를 통해 새로운 기준의 시행일을 연기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공개기업 (public business entities)과 특정 비영리기업 및 종업원급여제도 (employee benefit plans) 등은 2017 년 12 월 15 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 및 중간재무보고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2016 년 12 월 15 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 및 중간재무보고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기업들은 2018년 12월 15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보고 및 2019년 12월 15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중간재무보고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적용은 2016년 12월 15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 및 중간재무보고부터, 또는 2016년 12월 15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보고 및 기업이 새로운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으로부터 1년 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중간재무보고부터 허용됩니다.

IASB와 FASB의 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IASB와 FASB의 제안서는 각 위원회가 정한 적법한 절차를 통과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새로운 기준은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됩니다. 계약은 구속력이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간의 약정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구속력은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계약은 서면이나 구두에 의하거나 기업의 사업상 관행에 따라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산출하는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한편, 새로운 기준에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과의 계약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예컨대 리스계약, 보험계약, 금융상품과 기타 계약상 권리와 의무, 보증, 그리고 특정한 통화교환거래 등), 이를 제외한 고객과의 계약은 모두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회계처리 할 때에는 다른 회계처리 지침, 특히 리스와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전 및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 하에서도 고객과의 계약을 평가할 때 상품선물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the commodity contract accounting framework)을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준은, 다른 회계처리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된 계약 요소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선물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PwC의 [*Guide to Accounting for Utilities and Power Companies \(U.S. GAAP\)*](#) 또는 [*Financial reporting in the power and utilities industry \(IFRS\)*](#)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어떤 당사자가 사업상 관행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암묵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PwC)는 이러한 개념을 규제 고객 (regulated customers)에게 요금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거래 (tariff-based sales)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규제 기관이 서비스의 효율이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공익사업자 (utility)가 전력이나 가스, 수도 등의 구입, 전송, 판매 등에 관한 암묵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당 거래가 새로운 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AICPA의 Power and Utility Entities Revenue Recognition Task Force (“Task Force”)는 아직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Task Force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적용 과정에서 당면할 문제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만한 지침이나 적용사례를 제공하기 위한 단체로서 AICPA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 및 공익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상 약정이 새로운 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계약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	비고
전력공급계약 U.S. GAAP의 'Normal purchase / Normal sale 적용범위 배제'나 IFRS의 자가 사용 면제 (own use exemption)가 적용되는 약정을 포함	적용	전력거래소 (merchant market)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민간 발전사업자 (independent power producer)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임. 전력 공급 계약의 당사자인 발전사업자 (generator)는, 다른 회계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 요소들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임.
규제 요금을 적용하는 수익	적용	규제 기관이 서비스의 효율이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공익사업자 (utility)가 전력이나 가스, 수도 등의 구입, 전송, 판매 등에 관한 암묵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우리 (PwC)는 해당 거래가 새로운 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AICPA의 Power and Utility Entities Revenue Recognition Task Force ("Task Force")는 아직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에너지 효율 설비 (energy efficiency equipment)를 설치하고 정비하는 등의 홈 서비스	적용	온수기 등 에너지 효율 설비를 설치하고, 전자 장치를 유지, 보수하는 등의 홈 서비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함. 홈 서비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체결되는 용역 계약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발생시킴.

요율이 규제된 대가 (rate-regulated considerations) (U.S. GAAP 만 해당)

ASC 980-605에 의해 정의된 환불 조건부 수익 (revenue subject to refund) (U.S. GAAP만 해당)	적용하지 않음	U.S.GAAP은 환불 조건부 수익이, 기업과 고객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기업과 규제당국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한다고 명시함. 기존의 U.S. GAAP 지침 (ASC 980-605)은 새로운 기준의 도입 후에도 유효함. 품질보증의 경우와 다르게, 이를 판단할 때에는 새로운 기준에서의 인식 개념을 고려하여야 함.
ASC 980-605에 의해 정의된 선택 가능한 수익 프로그램 (alternative revenue program) (U.S. GAAP만 해당)	적용하지 않음	U.S.GAAP은 선택 가능한 수익 프로그램이, 기업과 고객과의 계약이 아니라, 기업과 규제당국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한다고 명시함. 기존의 U.S. GAAP 지침 (ASC 980-605)은 새로운 기준의 도입 후에도 유지되어 선택 가능한 수익 프로그램에서 비롯되는 규제 자산과 부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해당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부터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2014년 9월, IASB는 토론회 (Discussion Paper)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요율규제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확인하고, 이 중 어떤 특징이 요율규제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요율규제가 아닌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와 구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특정한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토론회는, IASB가 요율규제의 재무적 효과를 IFRS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보고하는 것이 최선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만한 방법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5일까지 이 토론회에 대한 의견이 집계되었으며, 2015년 3월 요율규제 Consultative Group 회의에서 집계된 의견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례 1 – 계약의 일부분만이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고객과의 계약

사실관계: Wisteria Wind Farm 사 (“판매자”)는 Rosemary Gas & Electric 사 (“구매자”)와 전력수급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산출되는 전력 100%와 이와 관계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redits)를 구매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회계정책에 따르면, REC는 풍력 (발전) 시설의 산출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전력수급계약에서 전력 요소는 리스 거래로서 회계처리 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전력수급계약에 따른 전력과 REC의 판매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할까요?

해설: 전력의 판매는 ASC 840, Leases에 따라 회계처리 될 것이므로, 이 계약의 전력 요소는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판매자의 회계정책에 따르면 REC는 풍력 시설의 산출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REC의 판매는 리스 거래가 아니고, 따라서 REC 요소는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판매

발전 및 공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가 새로운 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에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비금융자산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거래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해당 거래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받게 되지만, 만약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U.S. GAAP을 적용하는 발전 및 공익산업의 기업들은, 가스 파이프라인, 전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등을 판매하는 거래를 평가할 때 이 지침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부동산 판매 거래에 적용할 수익인식 모델을 결정할 때에는 아래 표에 설명된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시나리오	수익인식 모델
시나리오 1: 고객에게 비금융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고객에게 발전 시설 등 비금융자산을 판매하는 거래	거래 전체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
시나리오 2: 고객이 아닌 상대방에게 비금융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나서 (고객이 아닌 상대방에게)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비금융자산을 판매하는 거래.	ASC 610-20 (U.S. GAAP) / IAS 16, IAS 38, 또는 IAS 40 (IFRS)을 적용함. 해당 기준은 기업이 다음 사항을 판단할 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 자산에 대한 통제가 구매자에게 이전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 자산이 제거될 때 손익으로 인식될 금액 (변동가능대가로 인한 수익 (income) 인식의 제약사항이 있는지 고려)
시나리오 3: 고객이 아닌 상대방에게 사업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아닌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을 판매하는 거래	고객이 아닌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을 판매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연결회계처리에 대한 지침 (U.S. GAAP의 ASC 810, IFRS의 IFRS 10)이 요구하고 있는 제거 모델을 적용함.

고객과의 계약의 식별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고객과의 계약은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회계처리 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할 의도가 있고,
- 이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고,
-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고,

- d. 계약이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그리고
- e. 이전된 재화나 용역과의 교환으로 기업이 받을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음.

만약 상기 요건들이 고객과의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충족된다면, 사실관계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음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기 요건들의 충족 여부를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기 요건들이 계약 체결 시점에 충족되지 않았다면, 후속적으로 상기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약을 계속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계약의 병합

발전 및 공익사업의 기업들은 동일한 고객과의 둘 이상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적절하게 병합하면 회계 단위를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수익인식 모델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동일한 상대방에게 전력과 설비 (capacity)를 공급하기로 한 각각의 약정(즉 전력 공급 약정과 시설 공급 약정)을 같은 날 체결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계약 중 하나의 계약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다른 계약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두 계약은 하나의 경제적 목표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의 변경

발전 및 공익사업에서는 “Blend and extend”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Blend and extend 약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기존 계약상의 가격을 조정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 약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연장된 계약기간에 적용될 가격이 기존 계약상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 이 둘을 혼합 (blended)하면 혼합 가격은 기존 계약상의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혼합 가격 (blended price)이 낮아지는 효익을 누릴 수 있고, 판매자는 (기존 계약기간이 연장된 계약기간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계약 변경에 대한 문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경영진은 이러한 종류의 계약 변경을 회계처리 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에서 계약의 병합과 계약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이 각각 어떠한지 요약하고 비교한 표입니다.

새로운 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계약의 병합 (고객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고객과의 둘 이상의 계약이 동시 또는 근접한 시기에 체결되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들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회계처리 함. • 해당 계약들이 하나의 경제적 목표를 전제로 협상되었으며; • 한 계약의 대가금액이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또는 • 약속된 재화나 용역들이 단일한 이행의무로서 식별되는 경우.	만약 동일한 기업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둘 이상의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다면, (건설계약 회계기준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병합하여 회계처리 함.	둘 이상의 거래가 연관되어 있고, 해당 거래의 상업적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건설계약 회계기준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병합하여 회계처리 함.
계약의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을 별도의 계약으로 회계처리 함.	현행 U.S. GAAP 은 계약의 변경에 대한 회계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실제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은 다양함.	현행 IFRS 는 계약의 변경에 대한 회계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실제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은 다양함.

새로운 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 해당 변경이 구분된 (distinct) 재화나 용역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며, 그리고 - 계약 가격이, 추가로 약속된 재화나 용역의 독립적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하는 경우 계약의 변경이 별도의 계약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변경을 평가하여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함. - 만약 재화나 용역이 해당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이전되었던 재화나 용역과 구분된다면, 기존 계약의 종료와 신규 계약의 체결로 회계처리 함. - 만약 잔존 재화나 용역이 구분되지 않으며, 일부분이 충족된 단일한 이행의무의 남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계약 수익을 누적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함. 또는 - 위의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을 결합하여 회계처리 함.		

잠재적 영향:

Blend and extend 약정 등에 새로운 기준이 요구하는 계약 변경에 대한 회계지침을 적용하는 일은, 발전 및 공익산업의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며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Blend and extend 약정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만약 해당 변경이 구분된 재화의 수량 (예컨대, 전송하기로 한 전력량)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이전대가가 추가로 약속된 재화의 독립적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회계처리. 또는
- (2) 만약 해당 변경이 구분된 재화의 수량 (예컨대, 전송하기로 한 전력량)을 증가시키지만, 이전대가는 추가로 약속된 재화의 독립적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새로운 구분된 재화의 단위당 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전진적으로 회계처리 함.

일반적인 Blend and extend 약정에 수익을 누적적으로 조정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전력을 (추가로) 전송하기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구분된 재화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누적적으로 조정하는 회계처리는, 예컨대 하나의 이행의무로 여겨지는 건설 계약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 1 – 계약의 변경 – 전진적인 회계처리

사실관계: Power Sale Co. (“판매자”)와 Electric Buy Co. (“구매자”)는 전력을 매매하기 위해 체결했던 약정 (“기본 약정”)의 당사자들입니다. 기본 약정의 계약기간은 20X0 년 1 월 1 일부터 20x7 년 12 월 31 일까지이고, 계약가격 및 연간 계약수량은 각각 \$50/MWh 및 87,600MWh (시간당 10MW * 24 시간/일 * 365 일/년)이었습니다.

판매자는 전기를 공급하기로 한 의무가 일정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단일한 이행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기간에 걸쳐 전기를 판매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고객에게 이전되는 방식도 동일한 일련의 구별된 재화를 이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행의무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이행의무 식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행의무가 충족된다는 개념과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행의무가 충족될 때 (또는 충족됨에 따라) 수익인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 개시일로부터 2 년 뒤인 20X2 년 1 월 1 일, 판매자와 구매자는 (Blend and extend 약정의 방식으로) 기본 약정을 변경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은 2 년이 연장되었고, 연장된 2 년간 계약가격 및 연간 계약수량은 각각 \$60/MWh 및 87,600MWh 로 변경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이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할까요?

해설: 만약 계약 변경일에 판매자가, (1) 추가로 전송하기로 한 전력이 구분된 재화에 해당하고 (2) 추가된 \$10,512,000 ((\$60*87,600MWh) [9 년차] + (\$60*87,600MWh) [10 년차])의 이전대가가 추가로 약속된 재화의 독립적인 판매가격을 반영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Blend and extend 약정은 별도의 약정으로 회계처리 될 것입니다. 이 계약 변경을 별도의 약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와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거래 사이에 경제적인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판매자는 20x7 년 12 월 31 일까지 \$50/MWh 의 판매단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 갈 것이며, 20x8 년과 20x9 년에는 \$60/MW 의 판매단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 변경일에 판매자가 추가로 전송하기로 한 전력이 구분된 재화에 해당하지만, 추가된 \$10,512,000 ((\$60*87,600MWh) [9 년차] + (\$60*87,600MWh) [10 년차])의 이전대가가 추가로 약속된 재화의 독립적인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Blend and extend 약정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전진적으로 회계처리 될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기본 약정의 (남은) 6 년 (20x2 년 1 월 1 일부터 20x7 년 12 월 31 일) 및 추가된 2 년 (20x8 년 1 월 1 일부터 20x9 년 12 월 31 일)동안 인식될 총 이전대가의 금액은 \$36,792,000 ((\$50*87,600*6) + (\$60*87,600*2))이며, 이는 연간 \$4,599,000 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계약 변경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은, 기존 약정이 종료되고 신규 약정이 실행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례 2 – 계약 변경 – 건설 계약 – 누적적으로 조정하는 회계처리

사실관계: Gas Pipeline Co. (“판매자”)와 Energy Co. (“구매자”)는 운반지점 A 에서부터 운반지점 B 까지 천연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판매자는 20x0 년 1 월 1 일부터 20x1 년 12 월 31 일까지 2 년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으로 \$150,000,000 이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총 공사원가는 \$110,000,000 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단일한 이행의무입니다. 첫 회계연도에 판매자는 \$50,000,000 의 공사원가를 발생시켰습니다. 한편, 첫 회계연도말 판매자와 구매자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잔여 구간의 건설에 사용할 철강의 품질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래가격과 예상원가는 각각 \$10,000,000 및 \$7,500,000 만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할까요?

해설: 판매자는 이러한 변경이 기존 계약의 일부였던 것처럼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제공될 잔존 재화나 용역이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이전되었던 재화나 용역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변경은 (새로운) 이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해당 변경의 효과를 회계처리 하기 위해, 판매자는 거래가격과 진행율에 대한 추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계약 변경일에 (수익을) 누적적으로 조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판매자가 (1) 운반지점 A로부터 운반지점 B까지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의무를 일정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단일한 이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2)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판매자는 20x0년 12월 31일에 \$68,085,106 (\$160,000,000 [\$150,000,000+10,000,000] * (\$50,000,000/\$117,500,000 [\$110,000,000+\$7,500,000]))의 누적 수익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행의무가 충족된다는 개념과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행의무가 충족될 때 (또는 충족됨에 따라) 수익인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새로운 기준 하에서의 계약 변경을 회계처리 하는 방법은 현재 AICPA의 Task Force에 의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의무의 식별

이행의무란 고객에게 구별된 재화나 용역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전되는 방식도 동일한 일련의 구별된 재화나 용역의 집합)을 이전한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은 명백할 수도 있고 기업의 사업상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행의무를 식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각 이행의무가 충족된 때 (즉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된 때) 수익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고객과의 계약 내에서 식별되고 구분된 이행의무는 수익인식의 시기와 방법이 결정되는 회계단위가 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 일련의 구별된 재화나 용역의 집합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일련의 집합에 속하는 각각의 구별된 재화나 용역이 일정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2) 일련의 집합에 속하는 각각의 구별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한 경우.

발전 및 공익사업에서 체결되는 고객과의 계약은 복수의 이행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발전 및 공익사업의 기업들은, 고객에게 구별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다는 명백적, 암묵적인 약속들을 식별해 내기 위해 자신이 체결하고 있는 고객과의 계약을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에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이행의무들을 식별하는 절차에 관한 지침이 각각 어떠한지 요약하고 비교한 표입니다.

새로운 기준 ¹	현행 U.S. GAAP	현행 IFRS
이행의무 만약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거나, 또는 일련의 재화나 용역이 실질적이면서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한다면, 기업은 이행의무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해야 함. - 기업이 고객에게 연속적으로 (consecutively) 이전하기로 약속한 일련의 재화나 용역의 집합에 속하는 각각의 구별된 재화나 용역이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에 해당하고, - 일련의 집합에 속하는 각각의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단일함 (동일함) 만약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 것으로 봄.	복수의 산출물 (deliverables)을 전달하기로 한 약정이 건설계약 회계처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약정의 산출물이 다음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회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 전달된 항목 (item)이 독립적으로 보아도 고객에 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달되지 않은 항목들은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통제하고 있는 경우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내의 구분하여 식별 가능한 각각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해야 함. 해당 거래가 단일한 요소인지, 복수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고객의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새로운 기준 ¹	현행 U.S. GAAP	현행 IFRS
-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로부터 또는 그와 쉽게 이용가능한 다른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으며, - 해당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들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함. 계약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판단 요소는 다음을 포함하며,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해당 재화나 용역은 고객이 요구한 결합된 산출물 (combined output)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투입물 (input)이 아님. - 해당 재화나 용역은 계약 내의 다른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수정하거나 변경시키지 않음. - 해당 재화나 용역은 다른 약속된 재화나 용역과 매우 밀접하지도, 강하게 종속되어 있지도 않음.		

¹ 2015년 2월 IASB와 FASB는 이행의무의 식별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사례를 포함하는 등의 개정을 수행할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In transition US2015-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재적 영향:

전력공급계약에서 전력을 전송하겠다는 약속은,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전되는 방식도 동일한 일련의 구별된 재화나 용역의 집합을 이전한다는 약속에 해당합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은 구별된 재화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a) 고객이 전력 그 자체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고 (즉 고객은 전력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시장 등에 판매할 수 있고), (b) 전력을 전송하겠다는 약속은 계약 내의 다른 약속들로부터 구분하여 식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전력을 전송한다는 이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기업이 이행함과 동시에 효익을 제공받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에 대한 개념은 “이행의무가 충족될 때 (또는 충족됨에 따라) 수익인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일련의 (전력 전송) 집합에 속하는 각 전력 전송이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의 조건을 충족하며, 각 전력 전송의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천연가스나 설비 등과 같은 다른 재화를 계약상의 기간 동안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도,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고객에게 이전되는 방식도 동일한 일련의 구별된 재화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약정이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구별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것을 단일한 이행의무로 보고 회계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FASB 와 IASB 가 설립한 Joint Transition Resource Group 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oint Transition Resource Group 은 새로운 기준의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적용 과정에서 당면할 문제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Joint Transition Resource Group 가 진행하고 있는 검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In transition US2015-04](#) 를 참고하기가 바랍니다.

발전 및 공익산업 내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행의무를 식별하는 일은 판단을 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발전 및 공익산업의 기업에게 전력, 설비, 이에 부속하는 용역이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등과 같이 복수의 재화나 용역을 매개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기업이 이러한 계약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각각의 약속이 구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 1 – 이행의무의 식별 (전력수급계약)

사실관계: Solar Sun Power Co. (“솔라”)는 Power Buyer Co. (“구매자”)와 체결한 3 년간의 전력수급계약 (PPA)에 따라 구매자에게 전력과 REC 를 판매합니다. 해당 PPA 는 리스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PPA 의 전력 요소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솔라가 U.S. GAAP 하의 ‘Normal purchase / Normal sales 적용범위 배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습니다. 한편 PPA 의 REC 요소도 (순액 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의 모든 요소가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력에 대한 통제,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손실 위험과 함께, 전력이 송전망 (electricity grid) 내 한 지점을 통과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REC 의 경우에는, 솔라의 계정으로부터 구매자의 계정으로 REC 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에 대한 통제가 소유권 및 손실 위험과 함께 이전됩니다. 솔라 계정의 REC 가 구매자 계정으로 이전하는 일은 관련된 전력이 전송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에 발생합니다. 솔라와 구매자는 전력과 REC 에 대한 약정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이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솔라와 구매자 간의 PPA 에는 몇 개의 이행의무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해설: 전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동일한 일련의 구별된 재화를 고객에게 이전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합니다. 전력이 단일한 이행의무로서 기간에 걸쳐 충족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자는 전력 그 자체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는 전력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은 구별 가능합니다.)
2. 전력을 전송하겠다는 약속은 해당 PPA 내에서 구분하여 식별 가능합니다. (즉 전력은 계약 내에서 구별됩니다.)
3. 전력을 전송한다는 이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구매자는 솔라가 이행함과 동시에 효익을 제공받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4. 솔라가 구매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일련의 (전력 전송) 집합에 속하는 각 전력 전송이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의 조건을 충족하며, 각 전력 전송의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3 년 간의 PPA 기간 동안 매월 고객에게 REC 를 이전한다는 (즉 36 번 인도한다는) 약속은 다음에 근거할 때 구별된 재화에 해당합니다.

1. 구매자는 REC 그 자체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는 REC 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C 는 구별 가능합니다.)
2. REC 를 전송하겠다는 약속은 해당 PPA 내에서 구분하여 식별 가능합니다. (즉 REC 는 계약 내에서 구별됩니다.)

매월 REC 를 인도하는 (즉 36 번 인도한다는) 약속에서는, 각각의 인도가 일정시점에 충족되는 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약속들을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로 회계처리 하기 위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발전 및 공익산업의 많은 계약들은 전력과 함께 시설을 판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은 통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약속들이 계약 내에서 구분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전력과 시설이 각각 별도의 이행의무라고 결론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판단을 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에 대한 개념은 “이행의무가 충족될 때 (또는 충족됨에 따라) 수익인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 이행의무의 식별 (발전소의 설계 및 건축)

사실관계: Plant Builder Co. (“건설회사”)는 Facility Owner Co. (“소유자”)와 발전소를 설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건축 설계, 부지 정비, 전기 공사, 그리고 터빈 건설 등 고객에게 제공할 다양한 재화와 용역들을 파악하였습니다. 건축사는 개별적인 재화와 용역을 통상적으로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몇 개의 이행의무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해설: 재화와 용역들의 묶음은 단일한 이행의무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약속된 재화와 용역들은 구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소유자가 해당 재화와 용역들 그 자체로부터 또는 그와 쉽게 이용 가능한 다른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각각의) 재화와 용역들도 구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건설회사가 재화와 서비스들을 구분하여 다른 시장에 통상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각각의 재화와 용역들을 사용하고 소비하고 또는 판매함으로써 그들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화와 용역들은 계약 내에서는 구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들과 구분하여 식별 가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구입하기로 한 발전소를 완성하기 위하여 건설회사는 여러 재화와 용역들을 결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된 재화와 용역들은 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래가격의 결정

거래가격이란 고객에게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서 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 3 자를 대신하여 수취한 금액 (예컨대, 판매세 등)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전 및 공익산업에서 체결되는 계약은 대개 거래가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편인데, 특히 계약 가격이나 계약 수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종종 계약 가격이 지표에 연동하거나 계약 수량이 변동하는 경우 등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기로 한 요구부 계약 (Requirements contract)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요구부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거래될) 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판매자가 수취하게 될 총 이전대가가 얼마 일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판매자가 청구한 금액이 판매자가 그 시점까지 완료한 이행의 가치 (고객에게 제공된 가치)와 직접 대응된다면 판매자는 청구한 금액에 근거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청구”를 고려하는 실무 방편 등에 대해서는 “이행의무가 충족될 때 (또는 충족됨에 따라) 수익인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에 변동가능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또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계약의 거래가격의 결정은 판단을 요하는 더욱 복잡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에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지침이 각각 어떠한지 요약하고 비교한 표입니다.

새로운 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변동가능대가 기업은 거래가격, 즉 고객에게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서 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변동가능대가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됨. 변동가능대가는 기대가치와 최선의 추정치 중 보다 예측가능성이 높은 값으로 추정되어야 함. 거래가격에 변동가능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익인식에) 제약이 따름. 이 제약으로 인해, 이행의무가 충족되어 수익을 인식할 때 기업은 수익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까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만약 누적적으로 인식한 수익금액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U.S. GAAP) 또는 매우 높은 경우 (IFRS),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봄. 경영진은 유의적인 수익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에 포함해야 할 변동가능대가의 일부분 (즉 “최소금액”)이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함. 매 보고기간마다 경영진은 변동가능대가의 최소금액에 대한 판단과 함께 거래가격에 대한 추정을 재평가하여야 함.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함. 변동가능대와 관련된 수익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인식되지 않음. 확률 평가 (probability assessment)를 근거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음.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됨.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임.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매매할인, 수량리베이트 및 다른 인센티브 (예컨대 현금 결제 할인 등)를 고려하여 측정함. 만약 변동가능대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다른 수익인식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동가능대와 관련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유의적인 금융요소 고객이 (기업이) 이행하는 시점 보다 유의적으로 빠르거나 또는 늦게 결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금융요소가 포함될 수 있음. 이러한 시차는 고객이나 기업에게 효익을 제공하는데, 만약 기업이 고객의 매입 자금을 금융지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만약 고객이 선급 결제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금융지원 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효익을 얻음. 기업은 유의적인 금융 효익의 효과를 거래가격에 반영해야 함. 유의적인 고객 금융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수취한 이전대가의	현행 U.S. GAAP 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라는 요구 이외에는, 금융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IAS 18 은, 결제가 이연되고 해당 약정이 실질적인 금융거래로 여겨지는 경우 할인 (discounting)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새로운 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일부가 이자수익으로 계상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보다 작을 것임. 반면, 유의적인 기업 금융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이자비용이 계상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보다 클 것임.		

잠재적 영향:

발전 및 공익산업에서의 용역 계약 (예컨대 발전소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 계약 등)에는 성과 보상금 (performance bonus)과 같은 형태의 변동가능대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거래 가격을 결정할 때,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된 용역을 이전한 대가로서 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변동가능대가는 기대가치와 최선의 추정치 중 보다 예측가능성이 높은 값으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기대가치는 여러 발생 가능한 결과를 가능성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을, 최선의 추정치는 발생 가능한 결과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합니다. 추정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기업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방법은 유사한 종류의 계약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발전 및 공익산업의 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할 때가 있는데, 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장기인 계약이 암묵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거래가격은 화폐의 시간가치의 효과를 고려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 1 – 변동가능대가 – 성과 보상금

사실관계: IFRS를 채택한 Electric Company (“제공자”)는 Rosemary Gas and Electric Company (“구매자”)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공자는 구매자의 발전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제공자는 용역의 대가로서 \$10,000,000의 확정 보수와 성과에 따라 누진적으로 결정되는 성과 보상금을 수취하게 됩니다. 성과 보상금은, 만약 연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MW 당 원가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이상 절감되면 \$250,000로, 작년보다 12% 이상 절감되면 \$500,000로, 작년보다 15% 이상 절감되면 \$1,000,000으로 결정됩니다.

제공자가 구매자와 체결한 용역 계약은 제공자의 다른 용역 계약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경영진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성과 보상금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번 계약의 경우에는 기대가치법을 적용한 결과가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공자는 거래가격을 얼마로 결정해야 할까요?

해설: 거래가격은 제공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추정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기대가치법에 따른 추정이 더 예측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거래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가능성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대가

\$11,000,000 (확정 보수 + 성과 보상금 \$1,000,000) * 20% \$2,200,000

\$10,500,000 (확정 보수 + 성과 보상금 \$500,000) * 40% \$4,200,000

\$10,250,000 (확정 보수 + 성과 보상금 \$250,000) *40%

\$4,100,000

가능성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대가의 합계

\$10,500,000

제공자는 유사한 계약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들을 토대로 각각의 경우가 발생할 확률, 즉 발생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총 거래대가인 \$10,500,000 은 가능성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추정치를 반영한 값입니다. 제공자는 이 추정치를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제공자의 경영진은 유사한 계약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만약 거래대가에 변동가능대가 추정치 전체 금액인 \$500,000 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누적적으로 인식한 수익금액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변동가능대가는 제한 없이 수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공사가, 누적적으로 인식한 수익금액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제공사는 성과 보상금과 관련한 변동가능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만 포함하기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거래가격을 이행의무에 배분

발전 및 공익산업 내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전력 뿐만 아니라 설비, 이에 부속하는 용역이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함께 매매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묶음 약정 (Bundled arrangements)”이라 불리는 이러한 종류의 계약들은 통상 (묶음 단위에 대한) 확정된 가격을 포함합니다. 만약 묶음 약정이 복수의 이행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업은 해당 거래가격을 각각의 이행의무로 배분하여 수익이 적시에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에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거래가격을 이행의무에 배분하는 절차에 관한 지침이 각각 어떠한지 요약하고 비교한 표입니다.

새로운 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거래가격은 계약 내 이행의무들의 상대적인 독립판매가격에 근거하여 각 이행의무에 배분됨. 판매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독립판매가격은 추정되어야 함.	대가는 거래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인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배분되는데, 다만 ASC 605-25-30-4 와 30-5 에서 기술하고 있는 예외사항이 있음.	대가는 일반적으로 계약 내의 구분되는 요소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상대적 공정가치 또는 원가에 합리적인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됨. 잔존가액 또는 역 잔존가액 접근법 역시 사용될 수 있음.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 독립판매가격의 추정에 잔존가액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음.	인도된 항목에 배분되는 금액은, 미인도된 항목을 인도했는지 여부 또는 미래 이행의무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에 의존하지 않는 대가로 제한됨.	
변동가능대거나 할인 등과 같은 거래가격의 몇몇 요소들은 계약 내 모든 이행의무들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하나의 이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만약 변동가능대가의 조건들이 특정한 이행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또는 구별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또는 (조건들이) 특정한 이행의무를 충족시킴으로써 또는 구별된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관련되어 있으면) 해당		

새로운 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변동가능대가는 해당 이행의무에 배분될 수 있음. 할인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들이 만족되는 경우 특정한 이행의무에 배분함. - 통상적으로 기업이 계약 내의 각각의 구별된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판매함. - 통상적으로 기업이 구별된 재화나 용역들의 몇몇을 묶음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함. - 구별된 재화나 용역의 묶음에 귀속되는 할인은 계약 내의 할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각 묶음에 포함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약 내의 할인 전체가 귀속되어야 하는 이행의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음. 만약 거래가격이 후속적으로 변동한다면, 변동금액은 계약 체결 시점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행의무에) 배분되어야 함. 계약 체결 시점 이후 독립판매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거래가격을 재배분할 수는 없음.		

잠재적 영향:

발전 및 공익산업의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묶음 약정에 포함된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재화나 용역에는 전력, 설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묶음 약정 내의 각 이행의무에 배분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각 이행의무의 상대적인 독립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수행됩니다. 독립판매가격은 기업이 묶음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전력이나 설비, REC, 기타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분하여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에 적용할 가격을 의미합니다.

사례 1 – 거래가격의 배분 – 독립판매가격이 직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경우

사실관계: 20X0 년 1 월 1 일, Power Seller Co. (“판매자”)는 Power Buyer Co. (“구매자”)에게 20X0 년 6 월 한 달 동안 매 시간당 10MW 의 전력과 함께 이와 관련된 REC (MWh 당 하나의 REC)를 \$200/MWh 의 묶음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거래가격은 \$1,440,000 (10MW/시간 * 24 (시간/일) * 30 (20x0 년 6 월의 일수) * \$200/MWh)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계약의 전력 요소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U.S. GAAP 하의 ‘Normal purchase / Normal sales 적용범위 배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력 요소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 계약의 REC 요소는 파생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약정의 모든 요소가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판매자는 전력과 REC 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60/MWh 및 \$180/REC 의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이 가격은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시장의 가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판매자가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재화나 용역들은 계약 내에서 구분하여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재화나 용역은 구분된 재화나 용역으로서 별도의 이행의무로서 회계처리 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거래가격 \$1,440,000 을 이행의무들에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해설: 판매자는 거래가격 \$1,440,000 을 전력과 REC 의 상대적인 독립판매가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해야 합니다.

전력: \$360,000 $(\$1,440,000 * (\$432,000 [7,200 (20X0 \text{ 년 } 6 \text{ 월의 } MWhs) \times \$60/MWh] / \$1,728,000))$

REC: \$1,080,000 $(\$1,440,000 * (\$1,296,000 [7,200 (20X0 \text{ 년 } 6 \text{ 월의 } REC) \times \$180/REC] / \$1,728,000))$

비록 거래가격은 \$1,440,000 에 불과하지만,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판매했다면 전력과 REC 는 \$1,728,000 $((\$60 \times 7,200) + (\$180 \times 7,200))$ 에 판매되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인 독립판매가격에 근거한 배분은 결국 두 개의 이행의무에 \$288,000 의 할인금액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입니다. 계약 내에 반대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할인은 이행의무들에 비례적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 거래가격의 배분 – 독립판매가격의 추정

사실관계: Home Maintenance Co. (“판매자”)는 Customer Co. (“구매자”)와 에너지 효율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용역 및 검사 용역을 제공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래대가는 \$100,000 입니다.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25,000 및 \$45,000 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검사 용역은 판매자가 과거에 판매한 적이 없는 새로운 용역이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경쟁업체들은 검사용역을 일상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경쟁업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가격은 \$52,000 입니다. 검사 용역 시장에서 판매자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할 때 (즉 낮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판매자는 검사 용역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 용역의 가격을 \$55,000 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설치, 유지보수 및 검사 용역이 각각 별도의 이행의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거래가격 \$100,000 을 이행의무들에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해설: 판매자는 거래가격 \$100,000 을 설치, 유지보수 및 검사 용역의 상대적인 독립판매가격 (또는 그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해야 합니다

설치 용역: \$20,000 $(\$100,000 * (\$25,000 / \$125,000))$

유지보수 용역: \$36,000 $(\$100,000 * (\$45,000 / \$125,000))$

검사 용역: \$44,000 $(\$100,000 * (\$55,000 / \$125,000))$

비록 거래가격은 \$100,000 에 불과하지만,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판매했다면 해당 용역들은 \$125,000 에 판매되었을 것입니다. 상대적 독립판매가격에 근거한 배분은 결국 세 개의 이행의무에 \$125,000 의 할인금액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입니다.

이행의무가 충족될 때 (또는 충족됨에 따라) 수익인식

현행의 기준에서는 수익인식을 판단할 때 주로 위험과 효익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기업의 이행의무가 충족된 시점, 즉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통제는 일시에 이전될 수도 있고 기간에 걸쳐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은 수익인식의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력공급계약의 경우 판매자는 전력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합니다. 고객은 판매자가 이행함과 동시에 판매자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익을 제공받아 소비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기간에 걸쳐, 이행의무를 충족시키고 수익을 인식합니다. 판매자는 전력을 전송한다는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행률은 고객에게 전력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판매자의 이행의 양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에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이행의무가 충족될 때 (또는 충족됨에 따라) 수익인식 하는 절차에 관한 지침이 각각 어떠한지 요약하고 비교한 표입니다.

새로운 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수익은 이행의무가 충족된 시점, 즉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된 시점에 인식함. 통제는 일시에 이전될 수도 있고 기간에 걸쳐 이전될 수도 있음.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것으로 봄. ● 고객은 기업이 이행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익을 제공받아 소비함. ● 기업의 이행은 자산 (재공품)을 창출하거나 향상시키며, 고객은 자산이 창출되거나 향상됨에 따라 해당 자산을 통제함. ● 기업의 이행이 창출한 자산에 (기업의 관점에서) 대체적인 용도가 없고, 고객이 창출된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기업이 그 시점까지 완료한 이행에 대한 변제권 (right to payment)을 보유함. 기업은 해당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함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 (진행률)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을 포함함. 산출 기준 – 산출 기준은, 그 시점까지 이전된 재화나 용역의 (고객에게 제공된) 가치를 계약에 의해 약속되어 있는 잔존 재화나 용역의 가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임.	U.S. GAAP 은 건설이나 일부 제작형태 (production-type)의 계약에 대한 지침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수익인식에 성과비례 기준 (proportionate performance method)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익을 성과비례 기준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에 인식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침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원가투입 기준을 제외하고 완성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투입기준은 산출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적용할 수 있음. 만약 효익이 발생하는 양상이 식별 가능하다면 수익인식은 이에 근거함. 양상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정액법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할 수 있음.	IFRS 는 용역 제공을 해당 거래의 진행율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를 진행기준이라 함. 진행률은 (원가 대 원가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음. 용역 제공이 특정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활동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 진행률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특정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용역 제공의 일부로서 수행될 특정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특히 유의적일 때에는 수익인식의 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방법의 예로는 인도된 수량 기준, 청구된 금액 기준 등 (실무 방편)이 있음.

투입 기준 – 투입 기준은, 이행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이 행한 노력이나 투입을 당해 이행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상되는 총 투입량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임. 이러한 방법의 예로는 발생원가 기준, 노무시간 기준 등이 있음.

일시에 충족되는 경우

만약 계약 내의 이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기업은 일시에 (통제가 이전된 때) 수익을 인식함.

잠재적 영향:

일반적으로 전력수급계약 (PPA)에 따라 전력을 매매하는 의무는 단일한 이행의무로서 기간에 걸쳐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해당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새로운 기준이 기술하고 있는 허용 가능한 산출 기준 또는 투입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PPA의 경제적 본질, 가격이나 수량 조건과 같은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어떤 기준을 적용할 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매 보고기간에 인식되는 수익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은 선택한 방법이 기업이 이행의무를 충족해 가는 양상을 충실하게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은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방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기업이 그 시점까지 완료한 이행의 가치 (고객에게 제공된 가치)와 직접 대응된다면 기업은 해당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용역제공시간당 보수 또는 제공수량당 보수가 확정되어 있어 기업이 고객에게 해당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계약에 변동가능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계약기간에 걸쳐서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한 금액이 고객에게 제공된 가치와 직접 대응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 하에서 가격이 점차 또는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계약의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해석적 지침 (interpretative guidance)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 가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례 1 – 수익인식 –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의 측정

사실관계: Power Seller Co. (“판매자”)는 Power Buyer Co. (“구매자”)와 6년 간 전력을 매매하기로 하는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매시간 10MW의 전력을 구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87,600MWh). 가격은 계약 체결 시점의 전력 선물시장의 가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되었습니다.

1-2 년차: \$50/MWh

3-4 년차: \$55/MWh

5-6 년차: \$60/MWh

구매자에게 전력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서 판매자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인 거래가격은 \$28,909,000 (매 연차의 계약수량에 해당 연차의 계약가격을 곱한 결과의 합계)입니다. 판매자는 전력을 판매하기로 한 약속이 단일한 이행의무로서 기간에 걸쳐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이 PPA 에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면 될까요?

해설: 이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해소될 (settled)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PPA 기간 동안 전력을 전송한다는)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준은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기업이 그 시점까지 완료한 이행의 가치 (고객에게 제공된 가치)와 직접 대응된다면 기업은 해당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청구한 금액이 고객에게 제공된 가치와 직접 대응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실무 방안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 실무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수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것입니다.

계약연도	인식할 수익	계산내역
1 년차 및 2 년차	연간 \$4,380,000	87,600MWh * \$50/MWh [1 년차 및 2 년차의 계약가격]
3 년차 및 4 년차	연간 \$4,818,000	87,600MWh * \$55/MWh [3 년차 및 4 년차의 계약가격]
5 년차 및 6 년차	연간 \$5,256,000	87,600MWh * \$60/MWh [5 년차 및 6 년차의 계약가격]

주: 만약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점차로 상승하는 가격이 매년 고객에게 제공된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판매자는 수익인식을 위한 진행률을 인도된 수량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익은 (해당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에 따라) 계약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거래가격을 총 예상계약수량으로 나눠 계산한 단위당 평균가격을 적용한 결과와 같습니다.

종합 사례 – 5 단계 모델의 적용

사례 1 – 묶음 약정 (bundled arrangement) 에 5 단계 모델 적용

사실관계: Bundle Seller Co. (“판매자”)는 Bundle Buyer Co. (“구매자”)에게 매 시간당 10MW 의 전력과 함께 이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MWh 당 하나의 REC)를 확정된 묶음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X1 년 1 월 1 일부터 20X4 년 12 월 31 일까지 4 년 간이며, 각 연도 별로 묶음에 적용할 확정 가격은 각각 \$200, \$205, \$210 및 \$215 입니다. 묶음 가격이 증가하는 것은 계약 체결일 (acquisition date) 현재 전력과 REC 의 각 만기 별 선물가격이 상승해 가는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력에 대한 통제는,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손실 위험과 함께, 전력이 송전망 (electricity grid) 내 한 지점을 통과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REC 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계정으로부터 구매자의 계정으로 REC 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에 대한 통제가 소유권 및 손실 위험과 함께 이전됩니다. 판매자 계정의 REC 가 구매자 계정으로 이전하는 일은 관련된 전력이 전송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에 발생합니다. 판매자는 다른 시장 참여자와 전력 및 REC 에 대한 매매 약정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체결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 약정이 리스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유형자산 요소 (PPE)가 명시적으로도, 암묵적으로도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의 전력 요소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전력은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지점 (delivery location)에서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Normal purchase / Normal sales 적용범위 배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력 요소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 계약의 REC 요소는 (순액 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파생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약정의 모든 요소가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설:

1 단계 – 고객과의 계약의 식별

전력 요소와 REC 요소로 구성된 이 약정은 새로운 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계약 대가의 회수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단계 – 이행의무의 식별

이 계약에서 전력 요소는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전되는 방식도 동일한 일련의 구별된 재화나 용역의 집합을 이전한다는 약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력 요소는 단일한 이행의무로서 기간에 걸쳐 충족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은 구별된 재화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a) 구매자가 전력 그 자체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고 (즉 구매자는 전력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시장 등에 판매할 수 있고), (b) 전력을 전송하겠다는 약속은 계약 내의 다른 약속들로부터 구분하여 식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력 요소는 결합물을 생산하거나 구매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투입물이 아니고, 계약 내의 다른 약속들을 유의적으로 수정하거나 변경시키지도 않으며, 계약 내의 다른 약속된 재화들과 매우 밀접하지도, 강하게 종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2. 전력을 전송한다는 이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구매자는 기업이 이행함과 동시에 판매자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익을 제공받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3.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일련의 (전력 전송) 집합에 속하는 각각의 구별된 전력 전송이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의 조건을 충족하며, 각 전력 전송의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4 년 간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고객에게 REC 를 이전한다는 (즉 48 번 인도한다는) 약속은 다음에 근거할 때 구별된 재화에 해당합니다.

1. 구매자는 REC 그 자체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는 REC 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C 는 구별 가능합니다.)
2. REC 를 전송하겠다는 약속은 해당 계약 내에서 구분하여 식별 가능합니다. (즉 REC 는 해당 계약 내에서 구별됩니다.)

매월 REC 를 인도하는 (즉 48 번 인도한다는) 약속에서는, 각각의 인도가 일정시점에 충족되는 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약속들을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이행의무로 회계처리 하기 위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단계 – 거래가격의 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서 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판매자는 4 년 간의 계약기간 동안 매시간 10MW 의 전력을 확정된 묶음 가격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계약가격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상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격은 \$72,708,000 이며, 거래가격을 산정한 내역은 다음의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계약연도	계약가격	계약수량 (a)	금액
1	\$200/MWh	87,600MWh	\$17,520,000
2	\$205/MWh	87,600MWh	\$17,958,000
3	\$210/MWh	87,600MWh	\$18,396,000
4	\$215/MWh	87,600MWh	\$18,834,000
합계		350,400 MWh	\$72,708,000

(a) 연갈 계약수량: $10[\text{시간당 MW}] * 24[\text{시간/일}] * 365[\text{일/년}]$.

4 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 내의 이행의무에 배분

고객에게 전력을 전송한다는 약속은 하나의 이행의무로서 기간에 걸쳐 충족됩니다. 매월 고객에게 REC를 이전한다는 약속은 각각이 일시에 충족되는 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는 재화들의 상대적인 독립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각각의 이행의무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판매자는 묶음 약정을 구성하는 각 이행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구별된 재화들의 계약 체결 시점의 독립판매가격들을 결정하고, 이 독립판매가격들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전력과 REC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판매가격의 가장 객관적인 예 (best evidence)는 판매자가 다른 유사한 고객들에게 전력과 REC를 분리하여 판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전력이나 REC의 독립판매가격을 추정하거나 도출해 낼 필요 없이 (실제로 적용하는 가격인) 독립판매가격들을 이용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할 것이며, 이 배분 절차는 계약이 체결된 날 현재의 선물가격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전력과 REC의 독립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도	독립판매가격 – 전력 (a)	독립판매가격 – REC (a)	수량	총 독립판매가격 – 전력	총 독립판매가격 – REC	총 독립판매가격 – 합계
20X1	\$41/MWh	\$162/REC	87,600	\$3,591,600	\$14,191,200	\$17,782,800
20X2	\$43/MWh	\$165/REC	87,600	\$3,766,800	\$14,454,000	\$18,220,800
20X3	\$45/MWh	\$168/REC	87,600	\$3,942,000	\$14,716,800	\$18,658,800
20X4	\$47/MWh	\$171/REC	87,600	\$4,117,200	\$14,979,600	\$19,096,800
합계			350,400	\$15,417,600	\$58,341,600	\$73,759,200

(a) 이 사례에서 판매자는 전력과 REC의 독립판매가격이 계약이 체결된 날 현재 전력과 REC의 선물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 이후 전력과 REC의 독립판매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거래가격을 재배분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기간에 걸쳐 충족되는 단일한 이행의무인 전력 요소에 거래가격을 다음과 같이 배분할 것입니다.

전력: $\$15,197,872 \quad (\$72,708,000 * (\$15,417,600 \text{ [독립판매가격]} / \$73,759,200 \text{ [독립판매가격 합계]}))$

판매자는 각각이 일시에 충족되는 이행의무인 REC 요소에 거래가격을 다음과 같이 배분할 것입니다.

연도	연간 금액 (a)	계산 내역
20X1	\$13,988,950	$\$72,708,000 * (\$14,191,200 \text{ [독립판매가격]} / \$73,759,200 \text{ [독립판매가격 합계]})$
20X2	\$14,248,005	$\$72,708,000 * (\$14,454,000 \text{ [독립판매가격]} / \$73,759,200 \text{ [독립판매가격 합계]})$
20X3	\$14,507,059	$\$72,708,000 * (\$14,716,800 \text{ [독립판매가격]} / \$73,759,200 \text{ [독립판매가격 합계]})$
20X4	\$14,766,114	$\$72,708,000 * (\$14,979,600 \text{ [독립판매가격]} / \$73,759,200 \text{ [독립판매가격 합계]})$
합계	\$57,510,128	

(a)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력과 REC의 독립판매가격들의 합계금액 (\$73,759,200) 중에서 거래가격 (promised consideration) (\$72,708,0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매자가 재화의 묶음을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자로부터 제공 받는 할인금액에 해당합니다. 상대적 독립판매가격에 근거한 배분에 의하면, \$1,051,200의 할인금액도 각 이행의무에 비례적으로 배분됩니다. 전력 요소가 배분되는 할인금액은 \$219,728 ($\$1,051,200 * (\$15,417,600 / \$73,759,200)$)입니다. 20X1년 1월과 2월 REC를 이전하는 이행의무들에 배분되는 할인금액은 각각 \$17,177 ($\$1,051,200 * (\$14,191,200 * (31/365)) / \$73,759,200$) 및 \$15,515 ($\$1,051,200 * (\$14,191,200 * (28/365)) / \$73,759,200$)입니다. REC를 이전한다는 48개의 이행의무에 귀속되는 총 할인금액은 \$831,472 ($\$1,051,200 * (\$58,341,600 / \$73,759,200)$)입니다.

5 단계 – 이행의무가 충족될 때 (또는 충족됨에 따라) 수익인식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약속된 재화 (즉 자산)를 이전함으로써 이행의무를 충족시킬 때 (또는 충족시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산은 구매자가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를 획득할 때 (또는 획득함에 따라) 이전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재화의 사용을 지시하고 재화로부터 남아있는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매자는 해당 재화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한 것입니다.

판매자는 기간에 걸쳐 전력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고 구매자는 판매자가 이행함과 동시에 판매자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익을 제공받아 소비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기간에 걸쳐, 자신의 이행의무를 충족시키고 전력을 전송한다는 이행의무가 충족된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수익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진행률은 구매자에게 전력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판매자의 이행의 양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일시에 REC에 대한 통제를 이전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관련된 전력이 전송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준은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기업이 그 시점까지 완료한 이행의 가치 (고객에게 제공된 가치)와 직접 대응된다면 기업은 해당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청구한 금액이 고객에게 제공된 가치와 직접 대응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실무 방안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은 각 이행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제를 이전한 때 (예컨대 전력은 전력 송전망으로 전송한 때, REC는 구매자의 계정으로 이전한 때) 인식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위의 실무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판매자는 최초 3개월 동안 인도 (delivery)한 전력과 REC에 대한 수익을 다음과 같이 인식할 것입니다.

이행의무	20X1년 1월	20X1년 2월	20X1년 3월	20X1년 4월	합계
전력 수익*	\$300,502	\$271,421	\$300,502		\$872,425
REC 수익**		\$1,187,498	\$1,072,579	\$1,187,498	\$3,447,575
합계	\$300,502	\$1,458,919	\$1,373,081	\$1,187,498	\$4,320,000

* 전송된 확정 수량(1월과 2월, 3월에 각각 7,440 과 6,720, 7,440 MWhs)에 (전력에 배분된) 단위당 거래가격 \$40.39/MWh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위당 거래가격은 확정 묶음 가격 (\$200.00)에 상대적 독립판매가격의 비율 (\$3,591,600/\$17,782,800)을 적용하여 계산된 값입니다.

** 이전된 확정 수량(1월과 2월, 3월에 각각 7,440 과 6,720, 7,440 REC)에 (REC에 배분된) 단위당 거래가격 \$159.61/REC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위당 거래가격은 확정 묶음 가격 (\$200.00)에 상대적 독립판매가격의 비율 (\$14,191,200/\$17,782,800)을 적용하여 계산된 값입니다. REC가 구매자의 계정에 이전된 때, 즉 관련된 전력을 전송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에, 수익을 인식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최초 3개월 동안 인도 (delivery)한 전력과 REC에 대해 인식한 수익금액 (\$4,320,000)은 20X1년 1월과 2월, 3월에 걸쳐 3개월 동안 구매자에게 청구한 금액 (20X1년 1월: \$1,488,000 (10 [시간당 MW] * 24 [시간/일] * 31 [일/1월] * \$200 [묶음 가격]), 20X1년 2월: \$1,344,000 (10 [시간당 MW] * 24 [시간/일] * 28 [일/2월] * \$200 [묶음 가격]), 20X1년 3월: \$1,488,000 (10 [시간당 MW] * 24 [시간/일] * 31 [일/3월] * \$200 [묶음 가격])의 합계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각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된 시기가 고객에게 청구한 시기와 다르기 때문에 수익인식의 시기도 청구한 시기와 다릅니다.

주: 실무적으로, 유사한 묶음 약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상기한 바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경제적 본질, 여기에는 계약상 가격이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제공된 가치와 직접 대응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됩니다. (2) 시장 구조 (the market constructs) (예컨대 REC가 별도의 이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시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판매 포트폴리오 (sales portfolio)의 구성 (예컨대 전력이나 REC가 독립적으로 판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독립판매가격을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4) 통제가 이전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는 REC와 관련된 전력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REC에 대한 통제도 함께 이전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와 공시, 경과규정

새로운 기준과 관련된 표시와 공시, 경과규정 등에 대한 지침은 [In depth 2014-02](#) –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과 [PwC 2014 global accounting and reporting guide](#) –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일회계법인 산업별 전문가 그룹 - 발전 및 공익산업

삼일회계법인은 발전 및 공익산업의 선도기업들에게 폭넓은 회계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회계와 감사, 요율규제 (rate regulation), 재무위험관리, 수익인증, 세무, Transaction services, 환경규제 (environmental regulation), Sarbanes-Oxley Compliance, 기타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새로 도입되었거나 계속하여 진화해 가는 회계기준들이 발전 및 공익산업의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해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태영 전무

발전 및 공익산업 부문 리더

Phone: (02) 709-0424

Email : typark@samil.com